#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88 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박 정 • 한민수 • 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91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·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'재심사', '재검사', '재심'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, 합리적인 사유 없이 「행정기본법」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 · 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, 처리기한 · 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36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6조의2제1항 중 "20일"을 "30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일"을 "30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이의신청인에게"를 "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지 또는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의2(이의신청 등) ① 지방	제36조의2(이의신청 등) ①
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	
부 결정, 교부 조건, 교부 결정	
의 취소, 지방보조금의 반환명	
령 또는 삭감, 지방보조사업의	
수행 배제, 지방보조금의 수급	
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, 그	
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	
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	
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	
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	<u>3</u>
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	0일
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	
청할 수 있다.	
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	2
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, 지	
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, 지방	
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	
가금의 부과, 그 밖에 지방보조	
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	
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	
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	
받은 날부터 <u>20일</u> 이내에 서면	<u>30일</u>

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 실을 <u>이의신청인에게</u> 통지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③
<u>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</u>
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
·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
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
제3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
에 따른다.